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06년 6월 2일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총 무 과

-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단내 전보권” 위임

○ 기업지원과

-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관한 사항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

○ 관 광 과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다음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 삭제
 -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 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금액의 결정
 -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 도지사 권한인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 검토 의견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도 사업소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단내 전보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 관광과 소관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현지성 사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 세부내용은
 - ①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②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③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금액의 결정, ④관광지 조성계획의 고시, ⑤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⑥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등 6건의 위임사무는 삭제하고,
 - ①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②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등 2건의 위임사무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관한 사항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2004. 10. 22일 법률 제7240호로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고, 2005. 4. 23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 법령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석유제품외에 석유대체연료, 즉 석유대체연료대리점,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대상 사무가 포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시·군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석유제품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등록업무외에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주유소와 판매소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시·군에 추가 위임토록 하려는 것이며 시행일은 2006. 1. 1일부터 입니다.
- 이상과 같이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기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 다만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내용중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와 종류, 그리고 일반 석유제품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현재의 석유판매업 등록 관리현황과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추가 신설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증가량은 어떻게 예측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붙 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